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등〉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99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적용	3
2. 활성화구역 내 상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특례 신설	5
3.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화재공제 운영, 빈 점포 활용 촉진, 공동 사업의 활성화 등)	7
※ 참고자료	
1. 자율상권구역 현황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언주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6.
3. 회부연월일 : 2024.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인구 감소로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증가하는 한편,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 등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주하는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상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처럼 쇠퇴해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원책이 자율상권구역에 치중되어 있고, 보다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화재공제 운영, 빈 점포 활용 및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활성화구역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예외적 등록 대상에 지역상생구역 상인을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활성화구역 상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 신설).

나. 정부가 활성화구역 상인을 위한 화재공제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으로 판로 촉진, 상거래현대화 촉진 및 산학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0조).

라.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마. 활성화구역 내 상인들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적용

개정안은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 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29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u>활성화구역</u> ----- ----- -----.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¹⁾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전통시장 등의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조직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하여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현행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²⁾ 중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에 대해서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해당 구역 상인들의 매출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동법 시행 후 현재까지 지역상생구역은 지정 실적이 없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생구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부족하므로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³⁾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2. ‘활성화구역’ 내 상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특례 신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 기준 이하의 활성화구역 내 상인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있음(안 제29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조의2(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활성화구역 내 상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4)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려면 가맹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동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

3)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지역상생구역은 지정 실적이 없고 자율상권구역은 2024년 말 기준 12곳(참고자료 1)이 지정되는 데 그치고 있음.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 ⑤ (생략)

한 자가 사행산업·불법사행산업⁵⁾을 영위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활성화구역 내 상인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자도 개정안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자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목적이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활성화구역을 지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2. (생 략)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

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소관 법률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 등록 대상 범위의 예외를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활성화구역의 판매 촉진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입법체계 및 개정 실익 등을 고려하여 활성화구역 내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사용 촉진 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관련하여 별도의 업종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임.

3.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화재공제 운영 지원, 빈 점포의 활용 촉진, 공동사업의 활성화 등)

개정안은 정부가 화재로 인한 활성화구역 내 상인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공제사업 운영 비용 및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9조의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

구역 발전을 위하여 상인의 판로 촉진, 홍보 지원, 상거래현대화 촉진, 산학협력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0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의 활용 및 활성화구역 내 상인의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30조의2, 제30조의3).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용자 3. 상인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용자 4. 구역 <u>활성화</u>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u><신 설></u> <u><신 설></u>	제29조의3(화재공제 운영 지원) ① 정부는 화재로 인한 활성화구역 내 상인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화재공제의 운영 및 공제료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통시장”은 “활성화구역”으로 본다. 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u>활성화 전략 및 계획 수립 등을</u>----- 5. <u>상인의 판로 촉진 및 홍보 지원</u> 6. <u>전자상거래, 신용카드결제, 판매시</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범위, 지원신청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u>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현대화 촉진</u> <u>7. 구역 활성화를 위한 대학, 비영리법인, 단체 및 지역상생협의체·자율상권조합 간 산학협력사업 지원</u>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30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u> <u>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u> <u>1. 상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또는 행사 등을 위한 장소</u> <u>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u> <u>3. 활성화구역 내 청년상인 및 예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u> <u>4.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u> <u>5.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u>

현행	개정안
<신 설>	6. <u>지역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의 설치 장소</u> 7. <u>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u> ② <u>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제30조의3(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1. <u>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u> 2. <u>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u> 3. <u>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u> 4. <u>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활성화구역의 홍보에 관한 사업</u> 5. <u>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개정안의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지원, 전통시장 상인의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상거래현대화 촉진 및 산학협력사업 지원, 빈 점포의 활용 촉진, 공동사업의 활성화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6)과 유사한 내용인바, 할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 2의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 2의3.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5.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7. 그 밖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 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활성화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정부가 활성화구역 내 ‘상인’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인조직’의 손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활성화구역 내 화재공제 제도의 운영 목적에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는 것도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활성화구역 내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 현황⁷⁾을 고려할 때 활성화구역에 대한 별도의 화재공제 제도 도입은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그 외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책 확대에 대해서는 자생적·자립적 상권 운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

제29조(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관하여 자문 또는 지도를 하거나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을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7)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활성화구역 내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80.2%(2024년 12월 기준, 5곳 표본조사 결과)로 나타남.

【참고자료1】 자율상권구역 현황

참고	자율상권구역 현황('24년 말 기준, 총 12개)
----	-----------------------------

연번	지자체		구역명	구역 지정 고시일
	광역시	기초		
1	경남	함양군	함양한들상권	2023-08-31
2	경북	김천시	김천 삼색이수상권	2024-04-11
3	부산	동구	초량 이음자율상권	2024-04-30
4	부산	남구	유엔남구 대학로 상권	2024-05-01
5	전남	강진군	강진읍 청년통·오감통 상권	2024-05-02
6	전남	영암군	영암읍 라인업 자율상권구역	2024-04-19
7	전남	나주시	나주 영산포 자율상권구역	2024-04-22
8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2024-08-26
9	경남	거제시	거제 고현자율상권	2024-11-29
10	충북	청주시	청주시 소나무길 일원 자율상권구역	2024-12-06
11	충북	음성군	삼성면 원도심 자율상권구역	2024-12-05
12	제주	제주시	제주시 원도심 상권	2024-12-3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